

통신사업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강화

이 자료는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경쟁촉진 및 공정경쟁강화 계획이다. <편집자주>

I. 통신사업 경쟁촉진

가. 기본방향

- '98년 통신시장의 전면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'선 국내경쟁, 후 국제경쟁'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
- '90년대초 일부통신사업에 제한적 경쟁도입 : 국제전화('91), 무선호출('92), 이동전화('94), 시외전화('95)
- '96. 6 개인휴대통신 등 7개 분야에 27개 사업자를 선정
- '97 관계법을 개정, 전면적인 국내경쟁체제 구축
- '98 WTO협상 결과에 따라 단계적 국제경쟁 확대

나. 서비스별 경쟁확대

(1) 시내전화

- 현재 시내전화 역무는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어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선 유인이 적고 타 서비스 부문의 경쟁도 왜곡 우려
-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이용자 요구에 부응한 통신망의 다양화·고도화가 미흡
- '97년 중 전국규모 사업허가(1개)

- 기존 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선정하는 방안과 기간통신 사업자, 민간업체, 한전 등으로 구성된 허가신청 컨소시엄 중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
- 케이블TV망(CATV망 및 일정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유선 방송전송망 포함), 무선가입자 선로(WLL), 무선CATV망 등 기술방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
- ※ 각 기술방식의 병행사용(MIX)도 허용
- 전국을 서비스구역으로 허가하되 서비스제공은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

○ 관련제도 정비 및 보완

- 기존 전화사업자의 가입자와 동등한 번호를 부여하고 시내전화사업자간에 번호이동성 보장
- 새로운 기술방식(WLL, LMDS, CATV통신용 모뎀 등)에 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조기 추진
- ※ 사업희망자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계획 마련

(2) 시외전화

- 현재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점체제
- '97년중에 1개사업자 추가허가(3개사업자 경쟁

체제 구축)

- 기존 사업자중에서 신청받아 선정하는 방안과 허가신청자 중 신규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

※ 일본은 4개사업자 경쟁상태, 미국은 3개사업자가 시장주도

- 사업자간 경쟁추이, 기술발전추세 등을 분석하여 '98년 이후 추가허가하는 방안 검토

(3) 국제전화

- '96. 6 사업허가로 3개 사업자간 경쟁체제
 - ※ 미국은 3개사업자 주도, 일본은 3개사업자 경쟁체제
- 현행 3개사업자 경쟁체제를 유지하되, 사업자간 경쟁추이, 기술발전 추세 등을 분석하여 '98년 이후 추가 허가하는 방안 검토

(4) 주파수공용통신(TRS), 무선통신

- TRS 지역사업자 중 '96년 6월에 신청이 없었던 일부지역(전북, 충북, 강원 등)은 희망자가 나오는대로 '97년에 사업자를 허가하고 특정산업·분야별 차별화된 수요는 자가망으로 허가
- 무선통신은 시장규모가 크고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일부지방(부산, 대구 등)에 대해서 민간기업 희망시 '97년에 추가 허가 검토
 - ※ 쌍방향무선통신은 무선통신 경쟁상태,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무선통신

(5) 초고속망 사업(특정지역의 종합통신사업)

□ 초고속망사업자 제도 개요

- 사업지역 : 공항, 항만, 공업단지, 수출자유지역 등
- 제공역무 : 초고속정보통신역무, 전기통신역무, CATV전송
- 동일한 지분제한 : 전화역무 제공시 10/100, 무선의 경우 1/3

□ 제도보완

- 사업구역은 공단·항만 등과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확대

- 구체적인 사업구역 선정기준을 조속히 마련

-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복수지역 사업참여를 허용하거나 현재 10%한도로 되어 있는 동일인 지분을 확대(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)하는 방안 검토

- 방송법 개정시 초고속망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(CATV)의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

□ 승인추진

- '97년부터 사업구역별로 1개지역에 1개의 사업을 승인

(6) 국제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·위성사업

- '97년부터 신청기업에 대해 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

(7) 위성휴대통신(GMPCS)

- 국제적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에 국내기업 투자 참여
 - ICO(KT, 신세기, 삼성), 이리툼(KMT), 글로벌스타(현대, 데이콤)
 - ※ '96. 10 ITU포럼에서 단말기 상호인증 등에 관한 논의 예정
-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 논의, 외국동향 등을 감안하여 '97년 허가방침 결정
 - 관문국은 국내사업자에게 허가하되 사업허가 전에 국내참여 기업이 신청 하는 경우에는 실용화 시험국으로 허가하고 국내사업자 허가시 관문국 운영권을 국내사업자에 이관

(8) 차세대 이동통신(FPLMTS)

- 우리나라는 FPLMTS 대역에서 광대역 CDMA 구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나, 아직 기술개발은 본격화되지 않고 있음
 - ITU에서는 2000년 표준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일본 및 유럽에서도 아직 사업자허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

PCS를 기반으로 FPLMTS를 구현한다는 전략하에 FPLMTS대역에서 PCS사업자를 주파수 경매를 통해 선정

- 사업자 허가시기 및 방법은 국제기구 동향, FPLMTS 기술개발 추이 및 표준화 동향 등을 주시하여 '98년 이후에 결정
 -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표준제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FPLMTS 실험용 주파수 조기 할당

(9) 기타 틈새형 서비스

- 음성회선재판매
 - 음성회선재판매사업 허용을 위해서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, 통신요금 조정, 상호접속료 체계 조정 등 사전여건조성이 필요하므로
 - 국내사업자는 '99년부터 외국사업자는 WTO양허안대로 2001년부터 허용
- 국제콜백서비스

- 국가간 요금격차를 이용하여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으로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서비스 제한이 곤란
- WTO협상결과에 따라서 국내사업자의 설비이용, 상업적 주재, 국내통신 사업자와의 협정체결을 전제로 허용
- WTO협상결과에 따라 국내사업자의 설비이용, 상업적 주재, 국내통신사업자와의 협정체결을 전제로 허용
- 인터넷전화
 -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기존의 전화서비스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, 외국의 규제사례도 없으며 기술적 제한도 곤란
- 향후 기술개발 추세 및 외국의 규제추이, 기존 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정책방향 결정

FCC등과 통신위원회 비교

| 구 분 | 미국 FCC | 영국 OFTEL | 통 신 위 원 회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|---|
| | | | 현 행 | 1단계 기능보강 | 2단계 기능보강 |
| 업무범위 | ○통신·방송 (연방) -각주:공익위원회 | ○통신 | ○통신 | ○통신 | ○통신 ※방송기능 검토 |
| 성 격 및 위원구성 | ○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 -위원은 상원 인증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-위원 5인, 임기 5년(동일정당 3인 이하) | ○ 무역산업성 소속 독립행정기관(외청) -청장1인이 책임을 지는 독립제 · 무역산업성장관이 청장 임명 정의 결정이 무역산업성에 의해 거부될 수 있음 | ○ 정통부 소속 심의 기능·준사법적 기능의 행정위원회 -위원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-위원 9인 이내, 임기 3년(정통부 외부인사로 구성) | ○ 정통부 소속 준사법적 기능 중심 행정위원회 (업무처리는 독립성 유지) - 상임위원 1인 및 사무국 신설 - 위원임명 방식은 좌동 | ○ 위원회 조직보강 - 위원장 정무직 (대통령임명) - 상임위원 및 사무국 대폭 보강 |

| 구 분 | 미국 FCC | 영국 OFTEL | 통 신 위 원 회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|--|---|---|
| | | | 현 행 | 1단계 기능보강 | 2단계 기능보강 | |
| 기 능 | 허 가 | ○ 허가권한 보유 - 장거리, 국제통신, 이동통신, 방송, 위성통신, CATV | ○ 자문기능 ※ 허가권한은 무역산업성이 보유 | ○ 심의기능 - 허가심사 기준, 허가신청 요령 등 | ※ 허가권한은 정통부장관이 보유 ※ 허가심의기능은 정보통신정책심의회로 이관 | ※ 허가정책은 정통부장관이 보유 |
| | 통신자원 관리 및 기술규제 | ○ 주파수 관리 ○ 번호계획 ○ 망기술기준 ○ 단말기기 규제 | ○ 번호계획 ○ 망기술기준 ○ 단말기기 규제 ※ 주파수정책 및 관리는 무역산업성이 보유 | - - - - | ※ 자원관리 및 기술 관련 규제는 정통부장관이 보유 | ○ 번호계획 ○ 망기술기준 ○ 단말기기 규제 ※ 주파수정책 및 관리는 정통부장관이 보유 |
| | 영업규제 | ○ 요금 규제 ○ 회계방식규제 | ○ 요금 규제 ○ 회계방식규제 | - - | ※ 요금관련 규제는 정통부장관이 보유 | ○ 요금 규제 ○ 회계방식규제 |
| | 공정경쟁 확보 | ○ 상호접속관련 - 기준설정 - 협정인가 - 분쟁의 조정 ○ 불공정행위 제재 - 사업자 신고 수리 - 직권조사 - 직접 시정조치 ※ DOJ (Department of Justice) 와 FTC (Fair Trade Commission) 와 전반적 사항에 대해 협조관계 유지 | ○ 상호접속관련 - 기준설정 - 분쟁의 조정 ○ 불공정행위 제재 - 사업자 신고 수리 - 직권조사 - 직접 시정조치 ※ 무역산업성 산하 OFT (Office of Fair Trade) 와 경쟁법의 집행을 공동으로 수행 | ○ 상호접속관련 - 분쟁의 조정 ○ 불공정 행위 제재 - 장관이 요청한 시정조치에 대한 심의 | ○ 상호접속관련 - 기준설정 - 협정인가 - 분쟁의 조정 ○ 불공정 행위 제재 - 사업자 신고 수리 - 직권조사 - 직접 시정조치 ※ 불공정 행위 중 기술적·전문적사안은 통신위에서, 일반적사안은 공정거래위에서 처리 | ○ 좌 동 |

다. 관련제도 개선

(1) 허가제도 ('96년 법률개정에 반영)

- 사전공고방식을 폐지, 통신사업 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
- 자격요건 및 허가심사기준 등은 법령으로 규

-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
- 허가신청시기 및 세부 허가심사기준 등은 고시로 규정하여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기술발전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
- 허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, 신청법인이 자격요건 및 허가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허가

-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추가역무 허가절차를 간소화
 - 자격요건, 허가심사기준 완화 및 심사기간의 단축 등

※ 자체 인력양성, 기존대학 지원 등 정보통신인력양성계획을 허가심사시에 반영

(2) 평가방식

-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며 경쟁력 집중 문제가 없는 지역 무선통신사업부터 단계적으로 R & D 출연금 최고액방식 도입
 - 지역TRS, 지역무선호출은 중소·중견기업형 서비스로서 '97년부터 시범적용 추진 검토

(3) 통신사업의 인수·합병·분할

- 통신사업자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능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이종서비스간 인수·합병을 '98년부터 허용
 - 동종서비스간 인수·합병은 경쟁촉진 및 독과점 규제의 차원에서 불허
- 경영효율화 차원의 기존사업 분할도 '98년부터 허용

장기 통신사업 경쟁 기본방향(국내 전면 경쟁체제 정립후)

- 통신사업 진입·퇴출의 원칙적 자율화
 - 주파수 등 기술적 제약이 없는 경우 사업성 판단은 기업에 일임하고 정부는 일정 자격요건 및 기준에 적합하면 사업허가를 하여 시장개입을 최소화
 - ※ 허가기준은 국제규범, 국내산업육성, 기술개발,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 제정
- 무선서비스의 경우, 주파수 중심의 허가제도로 전환
 - 신규 주파수지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능력을 심사하여 주파수를 지정하고 사업허가
 - 기 지정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경우, 표준화 및 산업 정책적측면의 문제가 없고 주된 서비스에 부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역무로 허가

2. 공정경쟁 강화

마련

가. 기본방향

-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경쟁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
 - 통신사업의 경쟁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

-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전문화
 - 1단계로 통신사업 공정경쟁 관련기능을 통신위원회로 이관, 기능 및 조직강화
 - 2단계로 통신사업 규제기능은 통신위원회로 완전 이관하여 독립규제기관화

단계별 추진 내용

| 구 분 | 1 단계 | 2 단계 |
|-----|--|--|
| 조 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임위원 1인 신설 ○ 최소 규모의 사무국 설치 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 원 장 : 정무직 ○ 상임위원 : 3~5인 ○ 사무국 조직 확대 |
| 기 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정경쟁 확보 (상호접속, 불공정행위 제재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번호체계 등 통신자원관리 ○ 이용약관 인가등 영업규제 ※ 허가 및 주파수배분 관리정책 제외 |

나. 제1단계 추진내용('96년 법률개정에 반영)

□ 공정경쟁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

- 공정경쟁 관련조항의 통합 및 체계화
 - 현재 산재되어 있는 공정경쟁관련조항을 통합·체계화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정경쟁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
 - 상호접속, 정보공개, 회계분리 등의 법률근거를 명확히 규정
-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보강
 - 정정광고, 범위반사실 공표, 손해배상책임 등 신설
 -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

□ 통신위원회 개편

- 통신위원회를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전문화
 - 공정경쟁과 관련된 제도운용(기준설정, 협정인가) 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이관
 - 상호접속, 설비제공, 정보의 제공 등
 - 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의결권,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등 준사법적 기능 강화
- ※ 통신위원회의 정책심의기능은 분리하여 별도의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 신설(기존 통신진흥협의회를 대체)

- 통신위원회 분쟁조정기능 활성화
 - 통신위원회의 재정신청 대상을 협정체결에서 분쟁조정, 협정이행여부 등으로 확대
 - 통신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통신위원회에 직접 신청 허용
- 불공정행위 제재 권한 강화
 -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및 감독, 자료 제출 명령, 의견진술 요구 등
 - 통신위원회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권한 부여
- 통신위원회 조직보강
 - 상임위원(1급) 신설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
 - 실무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

다. 제2단계 추진내용('98년 이후 추진)

- 통신위원회 위상강화
 - 정부조직법 개정 : 위원장의 정무직화
 - 정통부 직제개정 : 상임위원 추가확보(3~5인) 및 사무국 확대
- 정통부 규제기능 이관
 - 번호체계 등 통신자원 관리
 - 이용약관 인가 등 영업규제
- ※ 단, 허가 및 주파수 배분관리 정책은 제외

통신사업경쟁촉진 및 공정경쟁강화요약

<서비스별 경쟁확대>

| 서 비 스 | 허 가 방 향 |
|---------------|---|
| 시내전화 | · '97년 허가하되 기술방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. (예) 광케이블, 무선가입자선로(WLL), 케이블TV망, 무선TV망(LMDS) 등 |
| 시외전화 | · '97년 허가 |
| 국제전화 | · '98년이후 추가허가 검토 |
| PCS, CT-2 | · 추가 허가 지양 |
| TRS. 무선데이터 | · 추가 허가 지양(일부지역 '97년 허가) |
| 무선호출 | · 수도권은 허가 지양, 지방권은 일부지역 '97년 추가 허가 |
| 쌍방향무선호출 | · 기존사업자 희망시 허가 |
| 초고속망 사업 | · '97년에 희망지역 승인 |
| 음성재판매(교환기 보유) | · 국내사업자 '99년 허용, 외국사업자 2001년 허용 |
| 국제콜백서비스 | · WTO협상결과에 따라 허가 검토 |

| 서 비 스 | 허 가 방 향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터넷전화 | · 국내외 추세를 검토하여 정책방향 결정 |
| 위성·해저광케이블임대사업 | · 민간기업체 희망시 '97년 허가 |
| 위성휴대통신 (GMPCS) | · 국제추세를 감안 '97년 방침 결정 |
| 차세대이동통신 (FPLMTS) | · 허가시기는 기술개발 추세 감안 '98년 이후 결정 |

※ 새로운 기술방식인 유선방송을 이용한 유·무선가입자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조기추진 및 실험용주파수 조기배정

〈제도개선〉

| 구 분 | 세 부 구 분 | 개 선 방 향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진입·퇴출 | 허가절차, 허가기준, 신청시기 | · 사전공고제 폐지, 정기신청 · 기존사업자의 추가역무허가 절차를 간소화 | |
| | 평가방식 | ·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, 일부 지역역무에 대해 R & D 출연금 최고액방식 도입 | |
| | 인수·합병·분할의 허용 | · 이종 서비스간 인수합병은 '98년 부터 허용(동종서비스는 불허) · 기존역무의 분할을 '98년부터 허용 | |
| 공정경쟁 | 공정경쟁제도 | · 공정경쟁관련조항 체계화 ·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| |
| | 통신위원회 | 1단계 | · 상임위원 1인 신설, 최소규모의 사무국 설치·운영 · 공정경쟁확보기능 강화 |
| | | 2단계 | · 위원장 : 정무직화, 상임위원 추가 확보, 사무국 조직 확대 · 통신자원관리 및 영입규제 (주파수 배분 관리정책 제외) |

신규필자모집

1. 원고내용 : 정보통신관련 제언, 정책동향, 기술동향, 해외동향
2. 분 량 : 30매 내외 (200자 원고지)
3. 마 감 : 매월 15일까지
4. 보내실곳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0-1 세라빌딩 16층
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홍보출판팀
TEL : (02) 5131-196~7 FAX : (02) 5131-112~3
5. 기 타 : 도착된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, 게재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.
 - 원고 제출시 증명사진 1매 약력, 전화번호, 현주소, 온라인통장번호 등을 작성해 주십시오.